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5카합10196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채 무 자 주식회사 A

주 문

1. 채무자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 제조위탁, 판매, 수출, 양도, 대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제품 및 그 제조에 사용된 설비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원씩 지급하라.



4. 제1 내지 3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10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위반행위 1일당 간접강제금 10,000,000원을 구하는 외에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기초사실

가. 채권자 회사는 카메라 렌즈를 비롯한 광학기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된 회사이다. 채권자 회사는 국내 최초로 교환렌즈를 생산한 이래 1999년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무역의 날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고성능 카메라 렌즈 분야의 기술에 매진하여 현재 교환렌즈로서 SLR 5종, DSLR 24종, Mirrorless 7종, CCTV 렌즈 18종, Mega Pixel급 9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나. 신청외 B는 2002. 2. 1.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C으로 바이어 개척·관리, 매출관리, 마케팅, 홍보 등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3. 31. 퇴사한 후 폴란드 국적의 D(D, 이하 'D'라 한다)와 함께 2014. 8. 7. 카메라 및 관련 부품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신청외 E, F, G, H (이하 'B, E, F, G, H'을 '이 사건 퇴사자'라 한다)은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한 후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퇴사자들은 2015. 9. 23. '이 사건 퇴사자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을 누설 또는 사용하였고, B는 퇴사한 이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채권자 회사의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채권자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 회사도 이 사건 퇴사자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682호).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퇴사자들이 채권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정보를 유출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환렌즈(이하 '이 사건 각 교환렌즈'라 한다)를 개발하였는데, 채무자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하여, ① 이 사건 각 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 ② 이 사건 각 교환렌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한다.

3. 이 사건 각 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를 구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영업비밀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 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2) 비공지성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채권자 회사가 개발한 렌즈의 개발, 제작, 검사 및 분석 등 기술에 관한 자료 및 신제품 개발 기획, 실행, 원가 산정, 거래처 등 영업에 관한 자료들인 사실이 소명되고, 기록상 이 사건 각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일부는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고, 역설계에 의해 이 사건 각 정보를 취득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 회사가 개발한 렌즈에 관한 자료 중 조리개 도면, 제품 조립, 분해 매뉴얼, 검사규격 기준 자료 등은 인터넷 등에 일부



공개되어 있으나, 위 공개된 자료에는 정확한 치수, 허용 공차, 부품에 대한 설명, 부품 제작시 주의사항 등 채권자의 노하우가 축적된 핵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공개된 자료가 이 사건 각 정보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역설계에 의하여 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신제품 기획, 원가 산정, 판매영업, 거래처 등 영업에 관한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채권자 회사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자료들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경제성 및 정보성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 회사는 1972년 설립된 이후 고성능 카메라 렌즈 분야 기술 개발에 매진하였는데, 수십 년 동안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 사건 각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경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어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축시켜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비밀유지성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은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며, 특히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및 설계는 대외에 일체 누설할 수 없다. 연구기술 개발요원 및 관리감독자로 근무하는 자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 누설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채권자 회사는 2013. 11. 15. 위 조항을 '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은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며, 연구개발, 핵심기술, 경영노하우에 관한 자료는 대외에 일체 누설할 수 없다. 전 임직원은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사실, 위 취업규칙의 개정에 따라 채권자 회사는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받았고, 이 사건 퇴사자들도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영업비밀을 복제하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는 영업비밀 보호대상을 '①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②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③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④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로 특정한 사실, 그 무렵 채권자 회사는 영업비밀 관리강화를 위하여 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정보보안규정에는 '모든 임직원은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및 처리 장치를 사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채권자 회사는 출입문 보안장치를 통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그룹웨어를 통해 사용자의 접속로그 및 방문횟수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채권자 회사는 설계도면을 외부에 반출할 경우 사본을 출력하여 '무단복제 및 유출금지'라고 표시하고, 반출 및 회수 내역을 '도면 출도 및 회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은 최대 1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퇴사자들이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각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정보의 부정취득 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퇴사자들이 채권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 채권자 회사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나온 뒤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노트북 등에 저장한 사실이 소명되고, B와 D가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퇴사자들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부정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퇴사자들이 부



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한다는 점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 회사로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의 사용 및 공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이 사건 각 교환렌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폴란드에서 I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채권자 회사와 사이에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채권자 회사의 교환렌즈 제품을 J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는 채권자 회사의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B와



2014. 8. 7.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설립된 지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에서 개발한 "K" 교환렌즈는 채권자의 "L" 교환렌즈와 첫 번째 렌즈군의 구성을 제외하고, 접합렌즈의 위치, 각 영역별 렌즈 구성, 화각에 있어서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2) 위 소명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렌즈 광학설계는 기존 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원하는 렌즈 사양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새로운 렌즈의 광학설계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② 국내에서 교환렌즈의 설계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채권자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두 곳에 불과하고, 교환렌즈 설계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교환렌즈 설계 및 제작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는 설립된 후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한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아닌 일본 특허(일본 공개번호 소62-50808)의 설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광학설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사의 "K" 교환렌즈와 일본 특허의 렌즈는 첫 번째 렌즈군의 렌즈매수가 4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합렌즈의 위치 및 Power의 배치, 비구면 렌즈의 사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일본 특허의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K" 교환렌즈를 설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하는데, 이 사건 각 정보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



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와 채권자 회사의 렌즈는 별개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M 교수 및 N 박사의 각 감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감정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와 채권자 회사의 렌즈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하는데 이 사건 각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조 등 금지를 구하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사는 "O" 교환렌즈를 개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자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제조 등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회사의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여 "O" 교환렌즈에 관한 설계데이터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O" 교환렌즈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아직 "O" 교환렌즈가 제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제조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 제조 등 금지를 구하는 대상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회사가 제조 등 금지를 구하는 대상물에는 "K" 및 "O"의 사양을 가지는 모든 교환렌즈 제품이 포함되므로, 영업비밀 침해와 무관하게 위 사양에 해당하면 제조 등이 금지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교환렌즈 제품을 개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 회사가 개발한 "O" 및 "K" 각 교환렌즈 제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되므로, 제조 등 금지를 구하는 대상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의 개발 또는 생산에 이 사건 각 정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 회사로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교환렌즈의 제조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간접강제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도 받아들여지, 다만 간접강제금액은 금지를 명하는 개별 행위 태양, 채권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일당 3,000,000 원으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4-20

재판장 판 사 정 재 규

 판 사 최 아 림

 판 사 박 선 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4-20

별지1

영업비밀 목록

(영업비밀 목록 삭제)

별지2

제품 목록

(제품 목록 삭제)